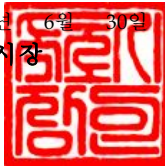


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4. 7. 14까지 속초시(민원봉사과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6월 30일
속초시장



1. 국가기초구역 개요

○ 기초구역 도입배경

통계·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

○ 기초구역 정의

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·면·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

○ 기초구역 활용범위

통계·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,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

2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시군구명	설정 등 현황			예비구역번호 수
	설정	변경	폐지	
속초시		1		95

※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은 별첨1 과 같으며 이를 속초시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속초시 민원봉사과(☎033-639-2719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3.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: 2014. 9. 26.

4. 문의

속초시 민원봉사과 (☎033-639-2719)